

[참고용]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등 사용 및 관리 방침

[온라인시스템상 교육기자재 희망신청 시, 작성 필요]

제1조(목적) 본 문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기자재 및 소모성 물품'(이하 기자재 등)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범위) 본 문서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품목은 진흥원에서 학교로 인계한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기자재 등의 일체로 한다.

제3조(관리원칙) ① 기자재는 일정 기간의 내용연수(※각 품목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참고, 총 8년 적용) 동안 학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보관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뿐 아니라 이후의 문화예술교육에도 적극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자재는 함께 동봉하여 배송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모성 물품은 당해 연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시간에 적극 활용하여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확인

제4조(학교의 의무) ① 학교는 기자재 등 수령 시 인수확인서(※하단 <붙임1> 참조)를 작성하여 운영업체(구매배송업체)에 팩스로 제출하고, 수령한 기자재는 반드시 예술강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학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교육활동 시 지원받은 기자재 등이 최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된 물품 불용 시 이후 지원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③ 학교는 지원되는 기자재 품목 외에 별도의 소모성 및 부자재 등을 구비하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자재 망실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동일 물품을 구입·보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진흥원에서 기자재 등 사용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확인

제5조(기자재 등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학교에 지원 기자재 등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의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기자재 등 활용 현황의 파악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기자재 등을 불용하는 경우 또는 지원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배치 시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 예술강사의 사업 활동포기(학교포기, 강사포기 등)로 인한 경우도 포함)

- 5. 사업 종료 후 지원 기자재를 학교 비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경우
- 6. 기타 본 문서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담당교사 확인
----------------------	----------------------------------

제6조(사후 관리) ①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활동 종료 후, 학교에서는 지원받은 기자재를 비품으로 등록하여 내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소정의 보관 기자재는 향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동일 분야 선정 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부장급 이상 교사 등의 책임하에 유지·보수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담당교사 확인
----------------------	----------------------------------

(별첨)사용 및 관리 방침 미준수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1. 기자재를 예술수업 목적 이외에, 학교 담당교사 개인이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사유화한 경우
2. 기자재를 예술강사가 학교 측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 받아야만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기자재를 예술강사가 학교 측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음에도 학교 담당교사 등 관계자가 전달을 거부한 경우
4. 기자재 배송 및 수령 정보를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에게 안내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전달 및 활용을 하지 않은 경우
5. 기자재를 학교 행정실에서 수령했으나,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방치한 경우
6. 기자재를 학교 행정실에서 수령했고 학교 담당교사에게 전달되었으나, 예술강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7. 기자재 지원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업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학교는 이를 전부 지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소모품 등 추가 자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연간 예술수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8. 기자재를 학교에서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술강사와 협의 없이 예술강사에게 보관·관리 등 책임을 전가한 경우
9. 당해 연도 수업이 종료된 후, 기자재 보관·관리 등 업무의 인수인계가 누락되어 해당 품목이 방치되거나, 지원 여부 및 품목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해 차후 예술수업에 활용되지 못한 경우

※ 위와 같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업과 무관한 활용 사례와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차후 해당 학교에 교육기자재 지원에 불이익 적용 예정

별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담당교사 확인
---------------------	----------------------------------